

# 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

## ※ 입찰 전 유의사항

- 당사(코리아신탁)가 진행하는 공매(공개매각)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와는 전혀 다른 일반매매에 해당합니다. 본 공고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 특히 부가가치세(대상 여부는 공고상 기재함) 대상 부동산은 해당 공매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비(발생일과는 관계없이 체납관리비 포함)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수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 낙찰 이후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당사(코리아신탁) 단독 판단으로 낙찰은 취소될 수 있으며, 공매공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 또는 매매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낙찰이 취소되거나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됩니다.
-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경우, 유의사항 전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매수인이나 제3자의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매매계약 등 공매조건을 부인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1. 공매목적부동산

연번	소재지	면적(m <sup>2</sup> )		비고
		토지(대지권의비율)	건물	
[별지1 부동산 목록 참고]				

주1) ①공매목적부동산 및 공매관련 세부내역은 등기부등본(신탁원부)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등기부등본 상 압류나 근저당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재산세 등 본 공매물건에 대하여 발생한 당사가 납부의무자인 제세공과금(당사로 고지된 물적납세의무 금원 포함)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는 당사가 매매대금 정산 시 본 공매대금에서 이를 납부합니다. ③신탁 부동산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와 개념 및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공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④본 공매의 매각방법은 [66개호 개별매각]입니다.

## 2. 입찰기간 및 입찰가격

회차	입찰기간 (10:00~16:00)	개찰기간 (09:30)	입찰가격 (단위 : 원)				입찰 및 개찰장소 (공매장소)
			토지	건물	부가세	합계 (VAT포함)	
1	'26.02.24.	'26.02.25.	[별지3 회차별 금액 참고]				온비드 홈페이지 (www.onbid.co.kr)
2	'26.02.26.	'26.02.27.					
3	'26.03.03.	'26.03.04.					
4	'26.03.05.	'26.03.06.					
5	'26.03.10.	'26.03.11.					
6	'26.03.12.	'26.03.13.					
7	'26.03.17.	'26.03.18.					
8	'26.03.19.	'26.03.20.					
9	'26.03.24.	'26.03.25.					
10	'26.03.26.	'26.03.27.					

- 주2) 전회차 공매가 유찰될 경우 차회차 공매 예정가격은 전회차 공매예정 가격에서 [101%(천원미만 단위절사)]차감됩니다.
- 주3)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개찰 이전에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4) 공매가 최종 유찰된 경우 우선수익자인 **구즉신용협동조합(☎042-935-8000)**의 수의계약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주5) 본 공매공고에서 매수인이 책임지는 사항 (명도 책임, 근저당 등 제한물권 등)은 매수인이 입찰 가격 외 별도의 금액으로 책임지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별지2. 제한권리현황 참조)
- 주6) 부동산 실거래 신고(금액)에 대한 책임(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포함)은 매수인이 지는 조건입니다.

## 3. 입찰에 관한 사항

### 가. 공매사항

- 1) 공매장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 2) 공매공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및 코리아신탁(주) 홈페이지(www.ktrust.co.kr)

- 3) 문의처 : 코리아신탁(주)[☎ 02) 6190-3873]
- 4) 입찰방법 : 본 공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이용한 인터넷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비드 이용방법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5) 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 6) 입찰의 성립 : 일반경쟁입찰로써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단독입찰도 유효)합니다.
- 7) 개찰 : 상기 일정에 따라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전자개찰 합니다.
- 8) 낙찰자 결정 : 최저 입찰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가격 입찰자 2인 이상이 동일금액일 경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자들만을 대상으로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취소 등 확인 : 본 입찰은 당사 사정 발생 시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당사로 입찰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①낙찰된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는 경우 낙찰은 취소될 수 있으며 ②당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위 ① 및 ②에서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된 경우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됩니다.
- 10) 기타 : 인터넷 전자입찰의 경우 개찰이 익영업일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1일 2회차 공매진행 시에는 전차에서 낙찰자가 있더라도 다음 차수 공매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공매실시 후 익영업일 개찰 결과, 전차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경우 다음 차수 응찰자는 응찰이 자동으로 취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

#### 나. 수의계약

- 1) 수의계약응찰자는 ①본 공매 공고의 마지막 회차인 10회차가 종료되거나 또는 공매 낙찰 후 매매계약이 해제(공매 낙찰 취소 포함)된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인 구축신용협동조합(☎042-935-8000)**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수의계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유찰일 기준 12개월 이내 수의계약 가능)**. 이 경우 당사가 요청한 조건(수의계약 금액은 전 회차 공매예정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공고 이후에 수의계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 2)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일시, 물건, 금액 등)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가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을 거부하여도 수의계약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응찰 전에 반드시 당사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매수희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의계약 신청 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입금계좌로 입금한 뒤, 매수신청서 및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아래 "수의계약 신청서류" 사본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서류는 수의계약 체결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수의계약 신청서류

- ① 수의계약 매수신청서 1부(당사 소정양식)
- ② 인감증명서(법인은 사용인감계 포함) 1부 및 인감도장
- ③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④ 위임장(대리인에 한함) 1부
- ⑤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 ⑥ 수의계약 신청 보증금 납부영수증 1부 (계약 체결일에 납부 가능)
- ⑦ 기타 수의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

#### 2. 수의계약 보증금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504-858370 (예금주 : 코리아신탁(주))**

- 4) 동일 물건에 접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 매수신청서를 제출한 자들을 대상으로 당사 및 (우선)수익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최고가 접수자를 수의계약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5) 2인 이상 매수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이후 수의계약 낙찰자의 수의계약 신청에 대한 기납입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전환됩니다. (단, 수의계약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들의 수의계약 신청에 대한 기납입 보증금은 이자 없이 5영업일 이내에 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됩니다.)
- 6) 단, 나. 수의계약 조항의 1)~5)호에도 불구하고 본 공매목적 부동산의 **제한권리현황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임대차 및 제한권리현황 참조)

#### 4. 입찰보증금

- 가. 입찰가격의 10% 이상을 인터넷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지정계좌에 입찰보증금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입금 및 환불시 은행 간 계좌이체 한도제한으로 10억 원 이상은 타행계좌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온비드 가상계좌 발급은행인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BNK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공매개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개찰일에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라. 납부계좌 추가발급을 통하여 입찰보증금을 중복 납부한 경우 온비드를 통하여 먼저 입금 확인된 금액 중 참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찰서상의 입찰보증금으로 보며, 뒤에 입금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입찰취소 또는 낙찰자결정 완료 후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입찰보증금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5.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조건

- 가. 계약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해성2빌딩 11층, 코리아신탁(주)
-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물건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수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사 소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가 14일 이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1회 이상 최고를 이행하고, 최고를 고지 받은 자(낙찰자 또는 매수인)의 이행(계약체결 등)이 없는 경우, 낙찰을 무효(취소)로 하고 입찰보증금(온비드 수수료 포함)은 당사에 위약금(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어 낙찰이 취소된 경우 또는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환불합니다.(단, 계약체결일은 낙찰자 및 당사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 입찰보증금은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으로 대체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잔금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잔금 납부를 2회 최고하고, 납부를 요청한 기일까지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통지와 함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납부된 계약금(또는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위약금(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잔금 납부 예정일 도과 전까지 1순위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 잔금 납부 예정일 도과일부터 납부일까지 미납금액에 연12%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조건(단, 잔금 납부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한함)으로 당사가 계약 체결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 물건은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낙찰자의 책임으로 주무관청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토지거래계약 불허가통지를 받은 때에는 낙찰은 취소되고,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됩니다.
- 라. 본 공매목적 부동산은 분양관리신탁의 목적물로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 : 매수인) 발행 의무가 위탁자에게**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당사는 일체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경우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위약금에 포함되어 당사에 귀속되고,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마. 대금납부방법

구 분	금 액	납부일	비고
계약금	매매대금의 10%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잔 금	매매대금의 90%	계약체결일로부터 <b>30일 이내</b>	

바. 계약 시 아래와 같이 계약서류를 지참하셔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가능) 및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공통사항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일 경우)

#### 6. 공매참가조건

- 가.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신고(계약해제 포함) 및 소유권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인지세 신고 등에 대한 책임(과태료 포함)을 부담합니다.
- 나. 매수인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다. 매수인은 공매목적 부동산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임대차, 유치권자, 분양계약자 등 포함)들의 정리는 매수인 책임으로 합니다. 매수인이 사전에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장 및 공부조사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사항(임대차 관련 승계, 강제퇴거, 민.형사상 문제 및 명도안행 등) 등을 사유로 당사에 낙찰 또는 매매계약의 취소나 매매대금의 감액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전조사(현장 및 공부조사 등)를 충분히 이행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별지. 임대차 및 제한권리현황 참조)
- 라. 본 목적 부동산에 존재할 수 있는 제한물권, 소송관련사항(소유권분쟁 포함), 임차권, 유치권,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민원사항 등은 매수인 승계 및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입니다(당사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향후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당사는 일체의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물건의 제한권리는 매수인 책임으로 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는 낙찰자가 기납부한 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합니다.
- 바. 매수인은 관계 법령에 의거 공매목적 부동산의 매매계약허가, 토지거래허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관련비용(이전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과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용도변경 등 인허가에 대한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 공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은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1) 매매대금 완납일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신탁사)는 공매목적부동산의 관리비, 수도, 가스, 전기요금 등 일체의 체납된 관리비 등 금액에 대하여 납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매수인이 현재 현황대로 인수하여 책임지고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매수인은 계약체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공매목적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일체(일반관리비, 수도, 가스, 전기요금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가 완납된 증명서를 당사에 제공하여야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 2) 공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당사가 납부의무자인 제세공과금(당사로 고지된 물적납세의무 금액 포함)은 잔금납부기한 만료일과 소유권 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당사가 납부의무자인 제세공과금(당사로 고지된 물적납세의무 금액 포함)은 당사(신탁사)가 매매대금에서 정산 지급하고, 그 이후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아. 공매목적 부동산에 표시되지 아니한 물건(쓰레기, 산업폐기물 포함)의 명도나 철거가 필요한 경우, 공매목적 부동산 자체에 대한 행정 관청의 건물 철거명령으로 인하여 철거책임(이행강제금, 벌과금 등 제비용 부담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건물 철거로 인하여 공매 목적 부동산의 가치가 저감되는 경우 등 공매 목적 부동산의 물리적·법적·행정적 현상이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자. 별지 1에 표기된 지번 및 면적은 신탁 등기된 신탁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입니다.

## 7. 유의사항

- 가.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인도 및 명도, 관리비 일체 납부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나. 응찰자는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예정자는 필히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라. 공매목적 부동산 중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마. 입찰물건의 행정상 규제, 공부 및 지적상의 하자(현황도로 등), 미등기건물, 기계기구 등의 구조·규격·품질·수량·면적 등이 입찰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대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며, 제3자 소유의 타워크레인, 가설자재 등 임대장비나 임대자재는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오니, 필히 사전에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답사하시고 그 사실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바.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어 낙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매수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수인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아. 매도자는 매각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 항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신 후 응찰 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1) 매각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수량의 차이 및 물적 하자(등기부등본과 현황의 차이 등)
  - 2) 법률상 원인무효로 인한 권리상실 내지 권리제한
  - 3) 행정상(환지, 징발, 개발제한, 기타 모든 도시계획) 권리제한
  - 4)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써 받는 권리의 제한
  - 5) 등기부 등 각종 공부상 목록과 현황과의 상이

- 6) 천재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
  - 7) 민법 제569조 내지 제581조에 정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 8) 본 사업부지 내의 유치권 및登記되지 않은 임대차
  - 9) 제한사항(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및 지상권, 유치권, 무단점유 등)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제한사항
  - 10) 권리관계 말소, 소송관련사항(소유권분쟁 포함)
- 자. 본 공매공고는 신탁관계인의 사정 등에 의하여 별도 공고 없이 임의로 취소 할 수 있고, 공매 목적 부동산의 원인채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공매 참가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 공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라도 공매목적 부동산의 원인 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제한물권의 실행, 민법상 무효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 납부한 매매대금 등은 이자 없이 환불합니다.
- 카. 공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체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 세대(호)별 매매대금 완납하였음을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매매 목적 부동산의 관리비 일체에 대한 완납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유권이전이 불가합니다.
- 타.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계약체결일 이후 30일 이내)등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당사에 공매 목적 부동산을 위탁한 위탁자의 조세체납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검인이나 등기접수가 거부되는 경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매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매수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파. 입찰 진행시 온비드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당해 토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에게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하. 공매 관련 내용은 당사 공매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의하며, 동 규칙 및 매매계약서 등은 당사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방문을 통해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 본 공고와 매매계약서 조항에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조항의 내용을 우선적용하기로 합니다.

2026. . .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별지1] 부동산 목록

□ 부동산 목록

연번	소재지	호실	면적(m <sup>2</sup> )		구분	
			토지(대지권의비율)	건물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07	3129.9	2.0156	20.37	근린생활시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14	3129.9	2.6875	27.16	근린생활시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22-2	3129.9	1.4169	14.32	근린생활시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23-2	3129.9	1.3853	14	근린생활시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26	3129.9	3.9907	40.33	근린생활시설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28-2	3129.9	1.3853	14	근린생활시설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29-2	3129.9	1.3853	14	근린생활시설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30-2	3129.9	1.3853	14	근린생활시설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31-2	3129.9	1.1775	11.9	근린생활시설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32-2	3129.9	1.2814	12.95	근린생활시설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01	3129.9	3.585	36.23	근린생활시설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03	3129.9	3.677	37.16	근린생활시설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04	3129.9	3.677	37.16	근린생활시설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05	3129.9	2.7577	27.87	근린생활시설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06	3129.9	2.7577	27.87	근린생활시설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07	3129.9	2.7577	27.87	근린생활시설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09	3129.9	7.5193	75.99	근린생활시설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10	3129.9	2.7577	27.87	근린생활시설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11	3129.9	3.677	37.16	근린생활시설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12	3129.9	3.677	37.16	근린생활시설
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13	3129.9	4.2628	43.08	근린생활시설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14	3129.9	3.677	37.16	근린생활시설
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15	3129.9	3.677	37.16	근린생활시설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16	3129.9	3.585	36.23	근린생활시설
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18	3129.9	4.4567	45.04	근린생활시설
2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19	3129.9	4.7862	48.37	근린생활시설
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22	3129.9	6.9681	70.42	근린생활시설
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23	3129.9	2.9368	29.68	근린생활시설
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25	3129.9	6.2992	63.66	근린생활시설
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26	3129.9	2.8482	28.5	근린생활시설
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29	3129.9	4.3894	44.36	근린생활시설
3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30	3129.9	4.3894	44.36	근린생활시설
3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31	3129.9	4.3894	44.36	근린생활시설
3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32	3129.9	4.3894	44.36	근린생활시설
3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34	3129.9	4.3894	44.36	근린생활시설
3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35	3129.9	8.9437	90.385	근린생활시설
3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36	3129.9	8.9437	90.385	근린생활시설
3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37	3129.9	5.7045	57.65	근린생활시설
3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38	3129.9	3.2208	32.55	근린생활시설
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39	3129.9	3.7542	37.94	근린생활시설
4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40	3129.9	4.8852	49.37	근린생활시설
4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424	3129.9	4.7417	51.75	오피스텔
4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428	3129.9	4.7417	51.75	오피스텔
4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533	3129.9	4.6962	51.03	오피스텔
4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608	3129.9	4.2252	46.13	오피스텔
4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612	3129.9	4.2252	46.13	오피스텔
4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708	3129.9	4.2252	46.13	오피스텔

4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802	3129.9	4.2252	46.13	오피스텔
4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808	3129.9	4.2252	46.13	오피스텔
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903	3129.9	4.2252	46.13	오피스텔
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021	3129.9	4.7417	51.75	오피스텔
5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128	3129.9	4.7417	51.75	오피스텔
5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135	3129.9	4.2252	46.13	오피스텔
5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136	3129.9	4.2252	46.13	오피스텔
5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233	3129.9	4.6962	51.03	오피스텔
5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302	3129.9	4.2252	46.13	오피스텔
5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429	3129.9	4.7417	51.75	오피스텔
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529	3129.9	4.7417	51.75	오피스텔
5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705	3129.9	4.2252	46.13	오피스텔
6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707	3129.9	4.2252	46.13	오피스텔
6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825	3129.9	4.7417	51.75	오피스텔
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826	3129.9	4.7417	51.75	오피스텔
6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1831	3129.9	4.6962	51.03	오피스텔
6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003	3129.9	4.2252	46.13	오피스텔
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004	3129.9	4.2252	46.13	오피스텔
6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64-1 다인로알팰리스	2027	3129.9	4.7417	51.75	오피스텔

※ 매수인은 공매목적 부동산을 용도 그대로 인수하며,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업종제한위반, 영업금지청구 등의 불이익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당사에 일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사전에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장 및 공부조사를 충분히 이행하여 매각부동산의 현황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매의 매매목적물은 신탁계약서 상 표시된 신탁부동산만을 포함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부동산을 제외한 지상물 및 건물 내 집기류 등은 금번 공매물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직접 관련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공매가격

(단위 : 원)

연번	호실	토지가격	건물가격	부가세	합 계	비고
[별지3 참고]						

※ 각 회차별 공매가격은 본 최초 공매가격을 기준으로 [10]%(천원미만 단위절사)씩 차감된 금액으로 산정되나, 호실 별 세부 금액은 당사가 정하기로 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단, 각 회차 별 공매예정금액 총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별지2] 소송 및 채권 보전 현황

□ 소송현황

사건번호	관할법원	사건명	원고	피고	소가(원)	비고
2024나49483	부산지방법원	[전자]소유권 이전등기	황은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33,402,890	
2024가합47414	부산지방법원	[전자] 관리비	다인로얄팰리스 서면1차관리단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565,023,320	

□ 채권보전현황

사건번호	관할법원	사건명	채권자	채무자 (채납자)	제3채무자	청구금액(원)	비고
2019카합 10251	부산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및채권가압류	신** 외15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352,924,500	
2019카합 10333	부산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이** 외19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3,965,568,700	
2019카합 1036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압류	권** 외15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4,622,375,955	
2019카합 10474	부산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김** 외14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3,664,916,344	
2019카합 10481	부산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정** 외15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4,005,769,500	
2019카합 10495	부산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	최** 외14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3,434,912,000	
2019카단 2222	울산지방법원	채권가압류	최**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0,747,500	
2019카합 10557	부산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권** 외10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2,577,188,500	
2020타채 2383	안산지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압류명령	박**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외2	194,231,475	
2020카단 40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채권가압류	해**	다인건설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외4	2,292,688,800	
2020타채 2796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박**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95,483,370	
없음	기타법원	채권양도통지	한**	고**			
없음	기타법원	채권양도통지	명**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2,209,000,000	
없음	기타법원	채권양도통지	새**	장**		236,500,000	
2020타채 60902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창**	다인건설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외2	5,354,108,762	
없음	기타법원	채권양도양수 통지	대**	이**		213,925,000	
없음	기타법원	채권양도양수 통지	구**	최**		145,232,500	
없음	안산	채권압류 통지(갑)	안산 세무서장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다인디벨로퍼)		2,548,457,980	
없음	안산	채권압류통지(갑)	안산 세무서장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다인디벨로퍼)			
2021카단 50410	안산지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민**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77,001,039	
2021카단 10069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가압류	부**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89,900,000	
2021카단 50421	안산지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김**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15,013,262	
2021카단 100852	인천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및채권가압류	건**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083,331,961	
없음	안산	추심요청서	안산 세무서장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다인디벨로퍼)		2,557,588,180	
2021카단 10012	안산지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에**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062,500,000	
2021카단	양산시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	경**	권**	코리아신탁	6,900,000	

70		구권 및 채권가압류			주식회사		
2021카단 212	부산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분금지	광**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021카단 101845	부산지방법원 등부지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수**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63,800,000	
2021타채 2525	울산지방법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최**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3,879,464	
2021카합 10356	부산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가압류	광**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329,027,138	
2021타채6 4501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	다인건설(주)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외1	99,703,782	
2021카합 21457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맑**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021타채 74920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엔**	오* 다인건설(주)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외6	2,173,978,147	
2021카단 53540	부산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임** 외8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24,503,770	
2021타채 5464	안산지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정**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55,254,517	
2021카경 223	부산지방법원	결정경정	백**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021카단 53712	부산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백**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2,611,838	
2021카단 53111	안산지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및신탁수익채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022타채 50863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스**	다인건설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386,971,511	
2022타채 666	안산지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871,126,012	
2022타채 54622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	다인건설(주)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235,285,443	
2022타채 55505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효**	다인건설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외2	896,215,502	
2022타채 516078	인천지방법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등	건**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083,331,961	
없음	기타법원	채권압류통지서	국**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다인디벨로퍼)		23,697,480	
없음	안산	채권압류통지(갑)	안산 세무서장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다인디벨로퍼)		1,015,200,000	
2022타채 60107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양**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9,986,262	
2022카단 50852	안산지원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	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022타채 62656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효**	다인건설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98,597,458	
2022카단 51686	부산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이** 외3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72,368,470	
2022타채 68286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황**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03,225,872	
2022타채 2872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80,309,198	
2022카단 53085	부산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이**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50,000,000	
없음	부산시 부산진구	압류예고서	부산 진구청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59,584,230	
2022타채 80437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다인건설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40,644,060	
없음	부산시 부산진구	재산압류통지서	부산 진구청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59,311,470	
2023타채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명**	다인건설	코리아신탁	3,960,559,496	

59726		주심명령			주식회사	주식회사	
2023카단 51409	부산지방법원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	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023타채 61672	안산지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황**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11,536,080
2023타채 63561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주심명령	신**		다인건설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외3	540,811,185
체납추적 과-5954	중부지방국세청	신탁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사전 안내	중부지방국세청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다인디벨로퍼)		132,524,510
세무1과-2 023023111	부산시 부산진구	재산 압류 통지서	부산진구청장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94,537,940
없음	안산	물적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	안산세무서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22,156,060
2023하단 100748	부산회생법원	파산선고(노**)			노**		
징수부-1310	기타법원	신탁수익권 압류건에 대한 납부이행 최고통보	국**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3,697,480
체납추적 과-14085	안산	채권 압류 통지(갑)	안산세무서		다인건설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2,809,813,410
2024타채 63525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주심명령	동**		다인건설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외2	565,052,495
징세과-T8 2918	시흥	채권 압류 통지(갑)	시흥세무서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7,691,650
2024차전 131113	부산지방법원	(지급명령)관리비	다**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외 1명		565,023,320
2024타채 2457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주심명령	이** 외56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768,345,793
2025타채 51454	안산지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압류명령	권**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517,534,214
2025타채 59680	안산지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	이**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68,514,977
2025타채 61924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주심명령	이**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69,024,566
2025타채 71055	안산지원	채권압류 및 주심명령	반**		다인건설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477,445,826
징수과-00 6074	경기도 안산시	채권압류통지서	안산시장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34,397,870
세무1과-004835	부산시 부산진구	(물적납세의무)신탁 재산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납부통지서	부산시 부산진구청장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32,568,900
세무1과-005873	부산시 부산진구	(물적납세의무)신탁 재산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납부통지서	부산시 부산진구청장		다인디벨로퍼 주식회사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32,214,050
2025타채 165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압류신청	송**		풍**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6,517,320

※ 매수인은 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현황을 충분히 인지한 후, 공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 현황은 누락 및 오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과 부정확한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해당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포함). 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현황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로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잔금납부일 이전에 고지된 해당 사업장의 신탁사가 납부의무자인 체납 제세공과금(당사로서 고지된 물적납세의무 금원 포함)은 매매대금에서 신탁사가 납부할 예정이으나, 2021년도부터 위탁자 명의로 부과된 제세공과금 미납금 및 해당 제세공과금 미납으로 인하여 신탁물건이 압류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소송 및 채권보전현황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기납부한 매매대금(입찰보증금 포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매 공고 이후, 소송 및 채권보전현황 등 제한권리현황이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납부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다인로얄팰리스서면1차관리단, 051-945-9070)

□ 임대차현황

임대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임대기간	임차료	비고
미 상						

※ 매수인은 공매목적 부동산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임차인, 유치권자, 분양계약자 등 포함)들의 정리는 매수인 책임(임대차보증금 반환 포함)으로 합니다. 또한 처분부동산내 임대차등의 임차인 존재시 매수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대차 조건의 승계(또는 임차인 강제퇴거, 민.형사상 문제 및 명도단행 등) 등 임대차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원인으로 당사에 낙찰 또는 매매 계약의 취소나 매매대금의 감액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후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매수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대금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사전에 입찰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장 및 공부조사를 충분히 이행하여 매각부동산의 현황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매물건 중 소유자인 당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미상의 전입세대(또는 전입신고 없는 거주자가 존재할 수 있음)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일체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별지3] 회차별 금액 (1회차\_최초 공매가)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1	107	95,420,000	381,680,000	38,168,000	<b>515,268,000</b>	35	234	95,875,000	287,625,000	28,762,500	<b>412,262,500</b>
2	114	127,140,000	508,560,000	50,856,000	<b>686,556,000</b>	36	235	195,650,000	586,950,000	58,695,000	<b>841,295,000</b>
3	122-2	31,980,000	127,920,000	12,792,000	<b>172,692,000</b>	37	236	195,650,000	586,950,000	58,695,000	<b>841,295,000</b>
4	123-2	31,200,000	124,800,000	12,480,000	<b>168,480,000</b>	38	237	124,800,000	374,400,000	37,440,000	<b>536,640,000</b>
5	126	199,160,000	796,640,000	79,664,000	<b>1,075,464,000</b>	39	238	58,825,000	176,475,000	17,647,500	<b>252,947,500</b>
6	128-2	31,200,000	124,800,000	12,480,000	<b>168,480,000</b>	40	239	68,575,000	205,725,000	20,572,500	<b>294,872,500</b>
7	129-2	31,200,000	124,800,000	12,480,000	<b>168,480,000</b>	41	240	83,200,000	249,600,000	24,960,000	<b>357,760,000</b>
8	130-2	31,200,000	124,800,000	12,480,000	<b>168,480,000</b>	42	424	65,884,000	169,416,000	16,941,600	<b>252,241,600</b>
9	131-2	26,520,000	106,080,000	10,608,000	<b>143,208,000</b>	43	428	65,884,000	169,416,000	16,941,600	<b>252,241,600</b>
10	132-2	28,860,000	115,440,000	11,544,000	<b>155,844,000</b>	44	533	68,068,000	175,032,000	17,503,200	<b>260,603,200</b>
11	201	78,325,000	234,975,000	23,497,500	<b>336,797,500</b>	45	608	58,604,000	150,696,000	15,069,600	<b>224,369,600</b>
12	203	80,275,000	240,825,000	24,082,500	<b>345,182,500</b>	46	612	58,604,000	150,696,000	15,069,600	<b>224,369,600</b>
13	204	80,275,000	240,825,000	24,082,500	<b>345,182,500</b>	47	708	58,604,000	150,696,000	15,069,600	<b>224,369,600</b>
14	205	60,450,000	181,350,000	18,135,000	<b>259,935,000</b>	48	802	63,336,000	162,864,000	16,286,400	<b>242,486,400</b>
15	206	60,450,000	181,350,000	18,135,000	<b>259,935,000</b>	49	808	63,336,000	162,864,000	16,286,400	<b>242,486,400</b>
16	207	60,450,000	181,350,000	18,135,000	<b>259,935,000</b>	50	903	63,336,000	162,864,000	16,286,400	<b>242,486,400</b>
17	209	182,650,000	547,950,000	54,795,000	<b>785,395,000</b>	51	1021	70,980,000	182,520,000	18,252,000	<b>271,752,000</b>
18	210	60,450,000	181,350,000	18,135,000	<b>259,935,000</b>	52	1128	70,980,000	182,520,000	18,252,000	<b>271,752,000</b>
19	211	80,275,000	240,825,000	24,082,500	<b>345,182,500</b>	53	1135	63,336,000	162,864,000	16,286,400	<b>242,486,400</b>
20	212	80,275,000	240,825,000	24,082,500	<b>345,182,500</b>	54	1136	63,336,000	162,864,000	16,286,400	<b>242,486,400</b>
21	213	103,675,000	311,025,000	31,102,500	<b>445,802,500</b>	55	1233	73,528,000	189,072,000	18,907,200	<b>281,507,200</b>
22	214	80,275,000	240,825,000	24,082,500	<b>345,182,500</b>	56	1302	63,336,000	162,864,000	16,286,400	<b>242,486,400</b>
23	215	80,275,000	240,825,000	24,082,500	<b>345,182,500</b>	57	1429	70,980,000	182,520,000	18,252,000	<b>271,752,000</b>
24	216	78,325,000	234,975,000	23,497,500	<b>336,797,500</b>	58	1529	70,980,000	182,520,000	18,252,000	<b>271,752,000</b>
25	218	108,225,000	324,675,000	32,467,500	<b>465,367,500</b>	59	1705	63,336,000	162,864,000	16,286,400	<b>242,486,400</b>
26	219	116,350,000	349,050,000	34,905,000	<b>500,305,000</b>	60	1707	63,336,000	162,864,000	16,286,400	<b>242,486,400</b>
27	222	152,425,000	457,275,000	45,727,500	<b>655,427,500</b>	61	1825	70,980,000	182,520,000	18,252,000	<b>271,752,000</b>
28	223	53,625,000	160,875,000	16,087,500	<b>230,587,500</b>	62	1826	70,980,000	182,520,000	18,252,000	<b>271,752,000</b>
29	225	137,800,000	413,400,000	41,340,000	<b>592,540,000</b>	63	1831	73,528,000	189,072,000	18,907,200	<b>281,507,200</b>
30	226	48,100,000	144,300,000	14,430,000	<b>206,830,000</b>	64	2003	65,156,000	167,544,000	16,754,400	<b>249,454,400</b>
31	229	95,875,000	287,625,000	28,762,500	<b>412,262,500</b>	65	2004	65,156,000	167,544,000	16,754,400	<b>249,454,400</b>
32	230	95,875,000	287,625,000	28,762,500	<b>412,262,500</b>	66	2027	73,164,000	188,136,000	18,813,600	<b>280,113,600</b>
33	231	95,875,000	287,625,000	28,762,500	<b>412,262,500</b>						
34	232	95,875,000	287,625,000	28,762,500	<b>412,262,500</b>						

[별지3] 회차별 금액 (2회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1	107	85,878,000	343,512,000	34,351,200	<b>463,741,200</b>	35	234	86,287,000	258,862,000	25,886,200	<b>371,035,200</b>
2	114	114,426,000	457,704,000	45,770,400	<b>617,900,400</b>	36	235	176,085,000	528,255,000	52,825,500	<b>757,165,500</b>
3	122-2	28,782,000	115,128,000	11,512,800	<b>155,422,800</b>	37	236	176,085,000	528,255,000	52,825,500	<b>757,165,500</b>
4	123-2	28,080,000	112,320,000	11,232,000	<b>151,632,000</b>	38	237	112,320,000	336,960,000	33,696,000	<b>482,976,000</b>
5	126	179,244,000	716,976,000	71,697,600	<b>967,917,600</b>	39	238	52,942,000	158,827,000	15,882,700	<b>227,651,700</b>
6	128-2	28,080,000	112,320,000	11,232,000	<b>151,632,000</b>	40	239	61,717,000	185,152,000	18,515,200	<b>265,384,200</b>
7	129-2	28,080,000	112,320,000	11,232,000	<b>151,632,000</b>	41	240	74,880,000	224,640,000	22,464,000	<b>321,984,000</b>
8	130-2	28,080,000	112,320,000	11,232,000	<b>151,632,000</b>	42	424	59,295,000	152,474,000	15,247,400	<b>227,016,400</b>
9	131-2	23,868,000	95,472,000	9,547,200	<b>128,887,200</b>	43	428	59,295,000	152,474,000	15,247,400	<b>227,016,400</b>
10	132-2	25,974,000	103,896,000	10,389,600	<b>140,259,600</b>	44	533	61,261,000	157,528,000	15,752,800	<b>234,541,800</b>
11	201	70,492,000	211,477,000	21,147,700	<b>303,116,700</b>	45	608	52,743,000	135,626,000	13,562,600	<b>201,931,600</b>
12	203	72,247,000	216,742,000	21,674,200	<b>310,663,200</b>	46	612	52,743,000	135,626,000	13,562,600	<b>201,931,600</b>
13	204	72,247,000	216,742,000	21,674,200	<b>310,663,200</b>	47	708	52,743,000	135,626,000	13,562,600	<b>201,931,600</b>
14	205	54,405,000	163,215,000	16,321,500	<b>233,941,500</b>	48	802	57,002,000	146,577,000	14,657,700	<b>218,236,700</b>
15	206	54,405,000	163,215,000	16,321,500	<b>233,941,500</b>	49	808	57,002,000	146,577,000	14,657,700	<b>218,236,700</b>
16	207	54,405,000	163,215,000	16,321,500	<b>233,941,500</b>	50	903	57,002,000	146,577,000	14,657,700	<b>218,236,700</b>
17	209	164,385,000	493,155,000	49,315,500	<b>706,855,500</b>	51	1021	63,882,000	164,268,000	16,426,800	<b>244,576,800</b>
18	210	54,405,000	163,215,000	16,321,500	<b>233,941,500</b>	52	1128	63,882,000	164,268,000	16,426,800	<b>244,576,800</b>
19	211	72,247,000	216,742,000	21,674,200	<b>310,663,200</b>	53	1135	57,002,000	146,577,000	14,657,700	<b>218,236,700</b>
20	212	72,247,000	216,742,000	21,674,200	<b>310,663,200</b>	54	1136	57,002,000	146,577,000	14,657,700	<b>218,236,700</b>
21	213	93,307,000	279,922,000	27,992,200	<b>401,221,200</b>	55	1233	66,175,000	170,164,000	17,016,400	<b>253,355,400</b>
22	214	72,247,000	216,742,000	21,674,200	<b>310,663,200</b>	56	1302	57,002,000	146,577,000	14,657,700	<b>218,236,700</b>
23	215	72,247,000	216,742,000	21,674,200	<b>310,663,200</b>	57	1429	63,882,000	164,268,000	16,426,800	<b>244,576,800</b>
24	216	70,492,000	211,477,000	21,147,700	<b>303,116,700</b>	58	1529	63,882,000	164,268,000	16,426,800	<b>244,576,800</b>
25	218	97,402,000	292,207,000	29,220,700	<b>418,829,700</b>	59	1705	57,002,000	146,577,000	14,657,700	<b>218,236,700</b>
26	219	104,715,000	314,145,000	31,414,500	<b>450,274,500</b>	60	1707	57,002,000	146,577,000	14,657,700	<b>218,236,700</b>
27	222	137,182,000	411,547,000	41,154,700	<b>589,883,700</b>	61	1825	63,882,000	164,268,000	16,426,800	<b>244,576,800</b>
28	223	48,262,000	144,787,000	14,478,700	<b>207,527,700</b>	62	1826	63,882,000	164,268,000	16,426,800	<b>244,576,800</b>
29	225	124,020,000	372,060,000	37,206,000	<b>533,286,000</b>	63	1831	66,175,000	170,164,000	17,016,400	<b>253,355,400</b>
30	226	43,290,000	129,870,000	12,987,000	<b>186,147,000</b>	64	2003	58,640,000	150,789,000	15,078,900	<b>224,507,900</b>
31	229	86,287,000	258,862,000	25,886,200	<b>371,035,200</b>	65	2004	58,640,000	150,789,000	15,078,900	<b>224,507,900</b>
32	230	86,287,000	258,862,000	25,886,200	<b>371,035,200</b>	66	2027	65,847,000	169,322,000	16,932,200	<b>252,101,200</b>
33	231	86,287,000	258,862,000	25,886,200	<b>371,035,200</b>						
34	232	86,287,000	258,862,000	25,886,200	<b>371,035,200</b>						

[별지3] 회차별 금액 (3회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1	107	77,290,000	309,160,000	30,916,000	<b>417,366,000</b>	35	234	77,658,000	232,976,000	23,297,600	<b>333,931,600</b>
2	114	102,983,000	411,933,000	41,193,300	<b>556,109,300</b>	36	235	158,476,000	475,429,000	47,542,900	<b>681,447,900</b>
3	122-2	25,903,000	103,615,000	10,361,500	<b>139,879,500</b>	37	236	158,476,000	475,429,000	47,542,900	<b>681,447,900</b>
4	123-2	25,272,000	101,088,000	10,108,800	<b>136,468,800</b>	38	237	101,088,000	303,264,000	30,326,400	<b>434,678,400</b>
5	126	161,319,000	645,278,000	64,527,800	<b>871,124,800</b>	39	238	47,648,000	142,944,000	14,294,400	<b>204,886,400</b>
6	128-2	25,272,000	101,088,000	10,108,800	<b>136,468,800</b>	40	239	55,545,000	166,637,000	16,663,700	<b>238,845,700</b>
7	129-2	25,272,000	101,088,000	10,108,800	<b>136,468,800</b>	41	240	67,392,000	202,176,000	20,217,600	<b>289,785,600</b>
8	130-2	25,272,000	101,088,000	10,108,800	<b>136,468,800</b>	42	424	53,366,000	137,226,000	13,722,600	<b>204,314,600</b>
9	131-2	21,481,000	85,924,000	8,592,400	<b>115,997,400</b>	43	428	53,366,000	137,226,000	13,722,600	<b>204,314,600</b>
10	132-2	23,376,000	93,506,000	9,350,600	<b>126,232,600</b>	44	533	55,135,000	141,775,000	14,177,500	<b>211,087,500</b>
11	201	63,443,000	190,329,000	19,032,900	<b>272,804,900</b>	45	608	47,469,000	122,063,000	12,206,300	<b>181,738,300</b>
12	203	65,022,000	195,068,000	19,506,800	<b>279,596,800</b>	46	612	47,469,000	122,063,000	12,206,300	<b>181,738,300</b>
13	204	65,022,000	195,068,000	19,506,800	<b>279,596,800</b>	47	708	47,469,000	122,063,000	12,206,300	<b>181,738,300</b>
14	205	48,964,000	146,893,000	14,689,300	<b>210,546,300</b>	48	802	51,302,000	131,919,000	13,191,900	<b>196,412,900</b>
15	206	48,964,000	146,893,000	14,689,300	<b>210,546,300</b>	49	808	51,302,000	131,919,000	13,191,900	<b>196,412,900</b>
16	207	48,964,000	146,893,000	14,689,300	<b>210,546,300</b>	50	903	51,302,000	131,919,000	13,191,900	<b>196,412,900</b>
17	209	147,946,000	443,839,000	44,383,900	<b>636,168,900</b>	51	1021	57,493,000	147,841,000	14,784,100	<b>220,118,100</b>
18	210	48,964,000	146,893,000	14,689,300	<b>210,546,300</b>	52	1128	57,493,000	147,841,000	14,784,100	<b>220,118,100</b>
19	211	65,022,000	195,068,000	19,506,800	<b>279,596,800</b>	53	1135	51,302,000	131,919,000	13,191,900	<b>196,412,900</b>
20	212	65,022,000	195,068,000	19,506,800	<b>279,596,800</b>	54	1136	51,302,000	131,919,000	13,191,900	<b>196,412,900</b>
21	213	83,976,000	251,930,000	25,193,000	<b>361,099,000</b>	55	1233	59,557,000	153,148,000	15,314,800	<b>228,019,800</b>
22	214	65,022,000	195,068,000	19,506,800	<b>279,596,800</b>	56	1302	51,302,000	131,919,000	13,191,900	<b>196,412,900</b>
23	215	65,022,000	195,068,000	19,506,800	<b>279,596,800</b>	57	1429	57,493,000	147,841,000	14,784,100	<b>220,118,100</b>
24	216	63,443,000	190,329,000	19,032,900	<b>272,804,900</b>	58	1529	57,493,000	147,841,000	14,784,100	<b>220,118,100</b>
25	218	87,662,000	262,986,000	26,298,600	<b>376,946,600</b>	59	1705	51,302,000	131,919,000	13,191,900	<b>196,412,900</b>
26	219	94,243,000	282,730,000	28,273,000	<b>405,246,000</b>	60	1707	51,302,000	131,919,000	13,191,900	<b>196,412,900</b>
27	222	123,464,000	370,392,000	37,039,200	<b>530,895,200</b>	61	1825	57,493,000	147,841,000	14,784,100	<b>220,118,100</b>
28	223	43,436,000	130,308,000	13,030,800	<b>186,774,800</b>	62	1826	57,493,000	147,841,000	14,784,100	<b>220,118,100</b>
29	225	111,618,000	334,854,000	33,485,400	<b>479,957,400</b>	63	1831	59,557,000	153,148,000	15,314,800	<b>228,019,800</b>
30	226	38,961,000	116,883,000	11,688,300	<b>167,532,300</b>	64	2003	52,776,000	135,710,000	13,571,000	<b>202,057,000</b>
31	229	77,658,000	232,976,000	23,297,600	<b>333,931,600</b>	65	2004	52,776,000	135,710,000	13,571,000	<b>202,057,000</b>
32	230	77,658,000	232,976,000	23,297,600	<b>333,931,600</b>	66	2027	59,262,000	152,390,000	15,239,000	<b>226,891,000</b>
33	231	77,658,000	232,976,000	23,297,600	<b>333,931,600</b>						
34	232	77,658,000	232,976,000	23,297,600	<b>333,931,600</b>						

[별지3] 회차별 금액 (4회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1	107	69,561,000	278,244,000	27,824,400	<b>375,629,400</b>	35	234	69,892,000	209,678,000	20,967,800	<b>300,537,800</b>
2	114	92,685,000	370,740,000	37,074,000	<b>500,499,000</b>	36	235	142,628,000	427,886,000	42,788,600	<b>613,302,600</b>
3	122-2	23,313,000	93,253,000	9,325,300	<b>125,891,300</b>	37	236	142,628,000	427,886,000	42,788,600	<b>613,302,600</b>
4	123-2	22,744,000	90,979,000	9,097,900	<b>122,820,900</b>	38	237	90,979,000	272,937,000	27,293,700	<b>391,209,700</b>
5	126	145,187,000	580,750,000	58,075,000	<b>784,012,000</b>	39	238	42,883,000	128,650,000	12,865,000	<b>184,398,000</b>
6	128-2	22,744,000	90,979,000	9,097,900	<b>122,820,900</b>	40	239	49,991,000	149,973,000	14,997,300	<b>214,961,300</b>
7	129-2	22,744,000	90,979,000	9,097,900	<b>122,820,900</b>	41	240	60,652,000	181,958,000	18,195,800	<b>260,805,800</b>
8	130-2	22,744,000	90,979,000	9,097,900	<b>122,820,900</b>	42	424	48,029,000	123,504,000	12,350,400	<b>183,883,400</b>
9	131-2	19,333,000	77,332,000	7,733,200	<b>104,398,200</b>	43	428	48,029,000	123,504,000	12,350,400	<b>183,883,400</b>
10	132-2	21,038,000	84,155,000	8,415,500	<b>113,608,500</b>	44	533	49,621,000	127,598,000	12,759,800	<b>189,978,800</b>
11	201	57,098,000	171,296,000	17,129,600	<b>245,523,600</b>	45	608	42,722,000	109,857,000	10,985,700	<b>163,564,700</b>
12	203	58,520,000	175,561,000	17,556,100	<b>251,637,100</b>	46	612	42,722,000	109,857,000	10,985,700	<b>163,564,700</b>
13	204	58,520,000	175,561,000	17,556,100	<b>251,637,100</b>	47	708	42,722,000	109,857,000	10,985,700	<b>163,564,700</b>
14	205	44,068,000	132,204,000	13,220,400	<b>189,492,400</b>	48	802	46,171,000	118,727,000	11,872,700	<b>176,770,700</b>
15	206	44,068,000	132,204,000	13,220,400	<b>189,492,400</b>	49	808	46,171,000	118,727,000	11,872,700	<b>176,770,700</b>
16	207	44,068,000	132,204,000	13,220,400	<b>189,492,400</b>	50	903	46,171,000	118,727,000	11,872,700	<b>176,770,700</b>
17	209	133,151,000	399,455,000	39,945,500	<b>572,551,500</b>	51	1021	51,744,000	133,057,000	13,305,700	<b>198,106,700</b>
18	210	44,068,000	132,204,000	13,220,400	<b>189,492,400</b>	52	1128	51,744,000	133,057,000	13,305,700	<b>198,106,700</b>
19	211	58,520,000	175,561,000	17,556,100	<b>251,637,100</b>	53	1135	46,171,000	118,727,000	11,872,700	<b>176,770,700</b>
20	212	58,520,000	175,561,000	17,556,100	<b>251,637,100</b>	54	1136	46,171,000	118,727,000	11,872,700	<b>176,770,700</b>
21	213	75,579,000	226,737,000	22,673,700	<b>324,989,700</b>	55	1233	53,601,000	137,833,000	13,783,300	<b>205,217,300</b>
22	214	58,520,000	175,561,000	17,556,100	<b>251,637,100</b>	56	1302	46,171,000	118,727,000	11,872,700	<b>176,770,700</b>
23	215	58,520,000	175,561,000	17,556,100	<b>251,637,100</b>	57	1429	51,744,000	133,057,000	13,305,700	<b>198,106,700</b>
24	216	57,098,000	171,296,000	17,129,600	<b>245,523,600</b>	58	1529	51,744,000	133,057,000	13,305,700	<b>198,106,700</b>
25	218	78,896,000	236,688,000	23,668,800	<b>339,252,800</b>	59	1705	46,171,000	118,727,000	11,872,700	<b>176,770,700</b>
26	219	84,819,000	254,457,000	25,445,700	<b>364,721,700</b>	60	1707	46,171,000	118,727,000	11,872,700	<b>176,770,700</b>
27	222	111,117,000	333,353,000	33,335,300	<b>477,805,300</b>	61	1825	51,744,000	133,057,000	13,305,700	<b>198,106,700</b>
28	223	39,092,000	117,277,000	11,727,700	<b>168,096,700</b>	62	1826	51,744,000	133,057,000	13,305,700	<b>198,106,700</b>
29	225	100,456,000	301,368,000	30,136,800	<b>431,960,800</b>	63	1831	53,601,000	137,833,000	13,783,300	<b>205,217,300</b>
30	226	35,064,000	105,194,000	10,519,400	<b>150,777,400</b>	64	2003	47,498,000	122,139,000	12,213,900	<b>181,850,900</b>
31	229	69,892,000	209,678,000	20,967,800	<b>300,537,800</b>	65	2004	47,498,000	122,139,000	12,213,900	<b>181,850,900</b>
32	230	69,892,000	209,678,000	20,967,800	<b>300,537,800</b>	66	2027	53,336,000	137,151,000	13,715,100	<b>204,202,100</b>
33	231	69,892,000	209,678,000	20,967,800	<b>300,537,800</b>						
34	232	69,892,000	209,678,000	20,967,800	<b>300,537,800</b>						

[별지3] 회차별 금액 (5회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1	107	62,605,000	250,420,000	25,042,000	<b>338,067,000</b>	35	234	62,903,000	188,710,000	18,871,000	<b>270,484,000</b>
2	114	83,416,000	333,666,000	33,366,600	<b>450,448,600</b>	36	235	128,365,000	385,097,000	38,509,700	<b>551,971,700</b>
3	122-2	20,982,000	83,928,000	8,392,800	<b>113,302,800</b>	37	236	128,365,000	385,097,000	38,509,700	<b>551,971,700</b>
4	123-2	20,470,000	81,881,000	8,188,100	<b>110,539,100</b>	38	237	81,881,000	245,643,000	24,564,300	<b>352,088,300</b>
5	126	130,668,000	522,675,000	52,267,500	<b>705,610,500</b>	39	238	38,595,000	115,785,000	11,578,500	<b>165,958,500</b>
6	128-2	20,470,000	81,881,000	8,188,100	<b>110,539,100</b>	40	239	44,992,000	134,976,000	13,497,600	<b>193,465,600</b>
7	129-2	20,470,000	81,881,000	8,188,100	<b>110,539,100</b>	41	240	54,587,000	163,762,000	16,376,200	<b>234,725,200</b>
8	130-2	20,470,000	81,881,000	8,188,100	<b>110,539,100</b>	42	424	43,226,000	111,153,000	11,115,300	<b>165,494,300</b>
9	131-2	17,399,000	69,599,000	6,959,900	<b>93,957,900</b>	43	428	43,226,000	111,153,000	11,115,300	<b>165,494,300</b>
10	132-2	18,935,000	75,740,000	7,574,000	<b>102,249,000</b>	44	533	44,659,000	114,838,000	11,483,800	<b>170,980,800</b>
11	201	51,389,000	154,167,000	15,416,700	<b>220,972,700</b>	45	608	38,450,000	98,871,000	9,887,100	<b>147,208,100</b>
12	203	52,668,000	158,005,000	15,800,500	<b>226,473,500</b>	46	612	38,450,000	98,871,000	9,887,100	<b>147,208,100</b>
13	204	52,668,000	158,005,000	15,800,500	<b>226,473,500</b>	47	708	38,450,000	98,871,000	9,887,100	<b>147,208,100</b>
14	205	39,661,000	118,983,000	11,898,300	<b>170,542,300</b>	48	802	41,554,000	106,855,000	10,685,500	<b>159,094,500</b>
15	206	39,661,000	118,983,000	11,898,300	<b>170,542,300</b>	49	808	41,554,000	106,855,000	10,685,500	<b>159,094,500</b>
16	207	39,661,000	118,983,000	11,898,300	<b>170,542,300</b>	50	903	41,554,000	106,855,000	10,685,500	<b>159,094,500</b>
17	209	119,836,000	359,509,000	35,950,900	<b>515,295,900</b>	51	1021	46,569,000	119,751,000	11,975,100	<b>178,295,100</b>
18	210	39,661,000	118,983,000	11,898,300	<b>170,542,300</b>	52	1128	46,569,000	119,751,000	11,975,100	<b>178,295,100</b>
19	211	52,668,000	158,005,000	15,800,500	<b>226,473,500</b>	53	1135	41,554,000	106,855,000	10,685,500	<b>159,094,500</b>
20	212	52,668,000	158,005,000	15,800,500	<b>226,473,500</b>	54	1136	41,554,000	106,855,000	10,685,500	<b>159,094,500</b>
21	213	68,021,000	204,063,000	20,406,300	<b>292,490,300</b>	55	1233	48,241,000	124,050,000	12,405,000	<b>184,696,000</b>
22	214	52,668,000	158,005,000	15,800,500	<b>226,473,500</b>	56	1302	41,554,000	106,855,000	10,685,500	<b>159,094,500</b>
23	215	52,668,000	158,005,000	15,800,500	<b>226,473,500</b>	57	1429	46,569,000	119,751,000	11,975,100	<b>178,295,100</b>
24	216	51,389,000	154,167,000	15,416,700	<b>220,972,700</b>	58	1529	46,569,000	119,751,000	11,975,100	<b>178,295,100</b>
25	218	71,006,000	213,019,000	21,301,900	<b>305,326,900</b>	59	1705	41,554,000	106,855,000	10,685,500	<b>159,094,500</b>
26	219	76,337,000	229,011,000	22,901,100	<b>328,249,100</b>	60	1707	41,554,000	106,855,000	10,685,500	<b>159,094,500</b>
27	222	100,006,000	300,018,000	30,001,800	<b>430,025,800</b>	61	1825	46,569,000	119,751,000	11,975,100	<b>178,295,100</b>
28	223	35,183,000	105,550,000	10,555,000	<b>151,288,000</b>	62	1826	46,569,000	119,751,000	11,975,100	<b>178,295,100</b>
29	225	90,410,000	271,231,000	27,123,100	<b>388,764,100</b>	63	1831	48,241,000	124,050,000	12,405,000	<b>184,696,000</b>
30	226	31,558,000	94,675,000	9,467,500	<b>135,700,500</b>	64	2003	42,748,000	109,925,000	10,992,500	<b>163,665,500</b>
31	229	62,903,000	188,710,000	18,871,000	<b>270,484,000</b>	65	2004	42,748,000	109,925,000	10,992,500	<b>163,665,500</b>
32	230	62,903,000	188,710,000	18,871,000	<b>270,484,000</b>	66	2027	48,002,000	123,436,000	12,343,600	<b>183,781,600</b>
33	231	62,903,000	188,710,000	18,871,000	<b>270,484,000</b>						
34	232	62,903,000	188,710,000	18,871,000	<b>270,484,000</b>						

[별지3] 회차별 금액 (6회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1	107	56,344,000	225,378,000	22,537,800	<b>304,259,800</b>	35	234	56,613,000	169,839,000	16,983,900	<b>243,435,900</b>
2	114	75,074,000	300,299,000	30,029,900	<b>405,402,900</b>	36	235	115,529,000	346,588,000	34,658,800	<b>496,775,800</b>
3	122-2	18,883,000	75,535,000	7,553,500	<b>101,971,500</b>	37	236	115,529,000	346,588,000	34,658,800	<b>496,775,800</b>
4	123-2	18,423,000	73,693,000	7,369,300	<b>99,485,300</b>	38	237	73,693,000	221,079,000	22,107,900	<b>316,879,900</b>
5	126	117,601,000	470,407,000	47,040,700	<b>635,048,700</b>	39	238	34,735,000	104,206,000	10,420,600	<b>149,361,600</b>
6	128-2	18,423,000	73,693,000	7,369,300	<b>99,485,300</b>	40	239	40,492,000	121,478,000	12,147,800	<b>174,117,800</b>
7	129-2	18,423,000	73,693,000	7,369,300	<b>99,485,300</b>	41	240	49,128,000	147,386,000	14,738,600	<b>211,252,600</b>
8	130-2	18,423,000	73,693,000	7,369,300	<b>99,485,300</b>	42	424	38,903,000	100,038,000	10,003,800	<b>148,944,800</b>
9	131-2	15,659,000	62,639,000	6,263,900	<b>84,561,900</b>	43	428	38,903,000	100,038,000	10,003,800	<b>148,944,800</b>
10	132-2	17,041,000	68,166,000	6,816,600	<b>92,023,600</b>	44	533	40,193,000	103,354,000	10,335,400	<b>153,882,400</b>
11	201	46,250,000	138,750,000	13,875,000	<b>198,875,000</b>	45	608	34,605,000	88,984,000	8,898,400	<b>132,487,400</b>
12	203	47,401,000	142,204,000	14,220,400	<b>203,825,400</b>	46	612	34,605,000	88,984,000	8,898,400	<b>132,487,400</b>
13	204	47,401,000	142,204,000	14,220,400	<b>203,825,400</b>	47	708	34,605,000	88,984,000	8,898,400	<b>132,487,400</b>
14	205	35,695,000	107,085,000	10,708,500	<b>153,488,500</b>	48	802	37,399,000	96,169,000	9,616,900	<b>143,184,900</b>
15	206	35,695,000	107,085,000	10,708,500	<b>153,488,500</b>	49	808	37,399,000	96,169,000	9,616,900	<b>143,184,900</b>
16	207	35,695,000	107,085,000	10,708,500	<b>153,488,500</b>	50	903	37,399,000	96,169,000	9,616,900	<b>143,184,900</b>
17	209	107,852,000	323,558,000	32,355,800	<b>463,765,800</b>	51	1021	41,912,000	107,776,000	10,777,600	<b>160,465,600</b>
18	210	35,695,000	107,085,000	10,708,500	<b>153,488,500</b>	52	1128	41,912,000	107,776,000	10,777,600	<b>160,465,600</b>
19	211	47,401,000	142,204,000	14,220,400	<b>203,825,400</b>	53	1135	37,399,000	96,169,000	9,616,900	<b>143,184,900</b>
20	212	47,401,000	142,204,000	14,220,400	<b>203,825,400</b>	54	1136	37,399,000	96,169,000	9,616,900	<b>143,184,900</b>
21	213	61,219,000	183,657,000	18,365,700	<b>263,241,700</b>	55	1233	43,417,000	111,645,000	11,164,500	<b>166,226,500</b>
22	214	47,401,000	142,204,000	14,220,400	<b>203,825,400</b>	56	1302	37,399,000	96,169,000	9,616,900	<b>143,184,900</b>
23	215	47,401,000	142,204,000	14,220,400	<b>203,825,400</b>	57	1429	41,912,000	107,776,000	10,777,600	<b>160,465,600</b>
24	216	46,250,000	138,750,000	13,875,000	<b>198,875,000</b>	58	1529	41,912,000	107,776,000	10,777,600	<b>160,465,600</b>
25	218	63,905,000	191,717,000	19,171,700	<b>274,793,700</b>	59	1705	37,399,000	96,169,000	9,616,900	<b>143,184,900</b>
26	219	68,703,000	206,110,000	20,611,000	<b>295,424,000</b>	60	1707	37,399,000	96,169,000	9,616,900	<b>143,184,900</b>
27	222	90,005,000	270,016,000	27,001,600	<b>387,022,600</b>	61	1825	41,912,000	107,776,000	10,777,600	<b>160,465,600</b>
28	223	31,665,000	94,995,000	9,499,500	<b>136,159,500</b>	62	1826	41,912,000	107,776,000	10,777,600	<b>160,465,600</b>
29	225	81,369,000	244,108,000	24,410,800	<b>349,887,800</b>	63	1831	43,417,000	111,645,000	11,164,500	<b>166,226,500</b>
30	226	28,402,000	85,207,000	8,520,700	<b>122,129,700</b>	64	2003	38,473,000	98,933,000	9,893,300	<b>147,299,300</b>
31	229	56,613,000	169,839,000	16,983,900	<b>243,435,900</b>	65	2004	38,473,000	98,933,000	9,893,300	<b>147,299,300</b>
32	230	56,613,000	169,839,000	16,983,900	<b>243,435,900</b>	66	2027	43,202,000	111,092,000	11,109,200	<b>165,403,200</b>
33	231	56,613,000	169,839,000	16,983,900	<b>243,435,900</b>						
34	232	56,613,000	169,839,000	16,983,900	<b>243,435,900</b>						

[별지3] 회차별 금액 (7회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1	107	50,710,000	202,840,000	20,284,000	<b>273,834,000</b>	35	234	50,951,000	152,855,000	15,285,500	<b>219,091,500</b>
2	114	67,567,000	270,269,000	27,026,900	<b>364,862,900</b>	36	235	103,976,000	311,929,000	31,192,900	<b>447,097,900</b>
3	122-2	16,995,000	67,981,000	6,798,100	<b>91,774,100</b>	37	236	103,976,000	311,929,000	31,192,900	<b>447,097,900</b>
4	123-2	16,580,000	66,323,000	6,632,300	<b>89,535,300</b>	38	237	66,323,000	198,971,000	19,897,100	<b>285,191,100</b>
5	126	105,841,000	423,367,000	42,336,700	<b>571,544,700</b>	39	238	31,262,000	93,786,000	9,378,600	<b>134,426,600</b>
6	128-2	16,580,000	66,323,000	6,632,300	<b>89,535,300</b>	40	239	36,443,000	109,330,000	10,933,000	<b>156,706,000</b>
7	129-2	16,580,000	66,323,000	6,632,300	<b>89,535,300</b>	41	240	44,215,000	132,647,000	13,264,700	<b>190,126,700</b>
8	130-2	16,580,000	66,323,000	6,632,300	<b>89,535,300</b>	42	424	35,013,000	90,034,000	9,003,400	<b>134,050,400</b>
9	131-2	14,093,000	56,375,000	5,637,500	<b>76,105,500</b>	43	428	35,013,000	90,034,000	9,003,400	<b>134,050,400</b>
10	132-2	15,337,000	61,349,000	6,134,900	<b>82,820,900</b>	44	533	36,174,000	93,019,000	9,301,900	<b>138,494,900</b>
11	201	41,625,000	124,875,000	12,487,500	<b>178,987,500</b>	45	608	31,144,000	80,086,000	8,008,600	<b>119,238,600</b>
12	203	42,661,000	127,984,000	12,798,400	<b>183,443,400</b>	46	612	31,144,000	80,086,000	8,008,600	<b>119,238,600</b>
13	204	42,661,000	127,984,000	12,798,400	<b>183,443,400</b>	47	708	31,144,000	80,086,000	8,008,600	<b>119,238,600</b>
14	205	32,125,000	96,376,000	9,637,600	<b>138,138,600</b>	48	802	33,659,000	86,552,000	8,655,200	<b>128,866,200</b>
15	206	32,125,000	96,376,000	9,637,600	<b>138,138,600</b>	49	808	33,659,000	86,552,000	8,655,200	<b>128,866,200</b>
16	207	32,125,000	96,376,000	9,637,600	<b>138,138,600</b>	50	903	33,659,000	86,552,000	8,655,200	<b>128,866,200</b>
17	209	97,067,000	291,203,000	29,120,300	<b>417,390,300</b>	51	1021	37,721,000	96,998,000	9,699,800	<b>144,418,800</b>
18	210	32,125,000	96,376,000	9,637,600	<b>138,138,600</b>	52	1128	37,721,000	96,998,000	9,699,800	<b>144,418,800</b>
19	211	42,661,000	127,984,000	12,798,400	<b>183,443,400</b>	53	1135	33,659,000	86,552,000	8,655,200	<b>128,866,200</b>
20	212	42,661,000	127,984,000	12,798,400	<b>183,443,400</b>	54	1136	33,659,000	86,552,000	8,655,200	<b>128,866,200</b>
21	213	55,097,000	165,291,000	16,529,100	<b>236,917,100</b>	55	1233	39,075,000	100,480,000	10,048,000	<b>149,603,000</b>
22	214	42,661,000	127,984,000	12,798,400	<b>183,443,400</b>	56	1302	33,659,000	86,552,000	8,655,200	<b>128,866,200</b>
23	215	42,661,000	127,984,000	12,798,400	<b>183,443,400</b>	57	1429	37,721,000	96,998,000	9,699,800	<b>144,418,800</b>
24	216	41,625,000	124,875,000	12,487,500	<b>178,987,500</b>	58	1529	37,721,000	96,998,000	9,699,800	<b>144,418,800</b>
25	218	57,515,000	172,545,000	17,254,500	<b>247,314,500</b>	59	1705	33,659,000	86,552,000	8,655,200	<b>128,866,200</b>
26	219	61,833,000	185,499,000	18,549,900	<b>265,881,900</b>	60	1707	33,659,000	86,552,000	8,655,200	<b>128,866,200</b>
27	222	81,004,000	243,014,000	24,301,400	<b>348,319,400</b>	61	1825	37,721,000	96,998,000	9,699,800	<b>144,418,800</b>
28	223	28,498,000	85,495,000	8,549,500	<b>122,542,500</b>	62	1826	37,721,000	96,998,000	9,699,800	<b>144,418,800</b>
29	225	73,232,000	219,697,000	21,969,700	<b>314,898,700</b>	63	1831	39,075,000	100,480,000	10,048,000	<b>149,603,000</b>
30	226	25,562,000	76,686,000	7,668,600	<b>109,916,600</b>	64	2003	34,626,000	89,039,000	8,903,900	<b>132,568,900</b>
31	229	50,951,000	152,855,000	15,285,500	<b>219,091,500</b>	65	2004	34,626,000	89,039,000	8,903,900	<b>132,568,900</b>
32	230	50,951,000	152,855,000	15,285,500	<b>219,091,500</b>	66	2027	38,882,000	99,983,000	9,998,300	<b>148,863,300</b>
33	231	50,951,000	152,855,000	15,285,500	<b>219,091,500</b>						
34	232	50,951,000	152,855,000	15,285,500	<b>219,091,500</b>						

[별지3] 회차별 금액 (8회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1	107	45,639,000	182,556,000	18,255,600	246,450,600	35	234	45,856,000	137,570,000	13,757,000	197,183,000
2	114	60,810,000	243,242,000	24,324,200	328,376,200	36	235	93,578,000	280,736,000	28,073,600	402,387,600
3	122-2	15,295,000	61,183,000	6,118,300	82,596,300	37	236	93,578,000	280,736,000	28,073,600	402,387,600
4	123-2	14,922,000	59,691,000	5,969,100	80,582,100	38	237	59,691,000	179,074,000	17,907,400	256,672,400
5	126	95,257,000	381,030,000	38,103,000	514,390,000	39	238	28,135,000	84,407,000	8,440,700	120,982,700
6	128-2	14,922,000	59,691,000	5,969,100	80,582,100	40	239	32,799,000	98,397,000	9,839,700	141,035,700
7	129-2	14,922,000	59,691,000	5,969,100	80,582,100	41	240	39,794,000	119,382,000	11,938,200	171,114,200
8	130-2	14,922,000	59,691,000	5,969,100	80,582,100	42	424	31,512,000	81,031,000	8,103,100	120,646,100
9	131-2	12,684,000	50,737,000	5,073,700	68,494,700	43	428	31,512,000	81,031,000	8,103,100	120,646,100
10	132-2	13,803,000	55,214,000	5,521,400	74,538,400	44	533	32,556,000	83,717,000	8,371,700	124,644,700
11	201	37,462,000	112,387,000	11,238,700	161,087,700	45	608	28,030,000	72,077,000	7,207,700	107,314,700
12	203	38,395,000	115,185,000	11,518,500	165,098,500	46	612	28,030,000	72,077,000	7,207,700	107,314,700
13	204	38,395,000	115,185,000	11,518,500	165,098,500	47	708	28,030,000	72,077,000	7,207,700	107,314,700
14	205	28,913,000	86,739,000	8,673,900	124,325,900	48	802	30,293,000	77,897,000	7,789,700	115,979,700
15	206	28,913,000	86,739,000	8,673,900	124,325,900	49	808	30,293,000	77,897,000	7,789,700	115,979,700
16	207	28,913,000	86,739,000	8,673,900	124,325,900	50	903	30,293,000	77,897,000	7,789,700	115,979,700
17	209	87,360,000	262,082,000	26,208,200	375,650,200	51	1021	33,949,000	87,298,000	8,729,800	129,976,800
18	210	28,913,000	86,739,000	8,673,900	124,325,900	52	1128	33,949,000	87,298,000	8,729,800	129,976,800
19	211	38,395,000	115,185,000	11,518,500	165,098,500	53	1135	30,293,000	77,897,000	7,789,700	115,979,700
20	212	38,395,000	115,185,000	11,518,500	165,098,500	54	1136	30,293,000	77,897,000	7,789,700	115,979,700
21	213	49,587,000	148,762,000	14,876,200	213,225,200	55	1233	35,168,000	90,432,000	9,043,200	134,643,200
22	214	38,395,000	115,185,000	11,518,500	165,098,500	56	1302	30,293,000	77,897,000	7,789,700	115,979,700
23	215	38,395,000	115,185,000	11,518,500	165,098,500	57	1429	33,949,000	87,298,000	8,729,800	129,976,800
24	216	37,462,000	112,387,000	11,238,700	161,087,700	58	1529	33,949,000	87,298,000	8,729,800	129,976,800
25	218	51,763,000	155,291,000	15,529,100	222,583,100	59	1705	30,293,000	77,897,000	7,789,700	115,979,700
26	219	55,649,000	166,949,000	16,694,900	239,292,900	60	1707	30,293,000	77,897,000	7,789,700	115,979,700
27	222	72,904,000	218,713,000	21,871,300	313,488,300	61	1825	33,949,000	87,298,000	8,729,800	129,976,800
28	223	25,648,000	76,946,000	7,694,600	110,288,600	62	1826	33,949,000	87,298,000	8,729,800	129,976,800
29	225	65,909,000	197,727,000	19,772,700	283,408,700	63	1831	35,168,000	90,432,000	9,043,200	134,643,200
30	226	23,006,000	69,018,000	6,901,800	98,925,800	64	2003	31,163,000	80,135,000	8,013,500	119,311,500
31	229	45,856,000	137,570,000	13,757,000	197,183,000	65	2004	31,163,000	80,135,000	8,013,500	119,311,500
32	230	45,856,000	137,570,000	13,757,000	197,183,000	66	2027	34,994,000	89,984,000	8,998,400	133,976,400
33	231	45,856,000	137,570,000	13,757,000	197,183,000						
34	232	45,856,000	137,570,000	13,757,000	197,183,000						

[별지3] 회차별 금액 (9회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1	107	41,075,000	164,300,000	16,430,000	221,805,000	35	234	41,271,000	123,813,000	12,381,300	177,465,300
2	114	54,729,000	218,918,000	21,891,800	295,538,800	36	235	84,220,000	252,662,000	25,266,200	362,148,200
3	122-2	13,766,000	55,065,000	5,506,500	74,337,500	37	236	84,220,000	252,662,000	25,266,200	362,148,200
4	123-2	13,430,000	53,722,000	5,372,200	72,524,200	38	237	53,722,000	161,166,000	16,116,600	231,004,600
5	126	85,731,000	342,927,000	34,292,700	462,950,700	39	238	25,322,000	75,966,000	7,596,600	108,884,600
6	128-2	13,430,000	53,722,000	5,372,200	72,524,200	40	239	29,519,000	88,557,000	8,855,700	126,931,700
7	129-2	13,430,000	53,722,000	5,372,200	72,524,200	41	240	35,814,000	107,444,000	10,744,400	154,002,400
8	130-2	13,430,000	53,722,000	5,372,200	72,524,200	42	424	28,360,000	72,928,000	7,292,800	108,580,800
9	131-2	11,415,000	45,663,000	4,566,300	61,644,300	43	428	28,360,000	72,928,000	7,292,800	108,580,800
10	132-2	12,423,000	49,693,000	4,969,300	67,085,300	44	533	29,301,000	75,345,000	7,534,500	112,180,500
11	201	33,716,000	101,149,000	10,114,900	144,979,900	45	608	25,227,000	64,869,000	6,486,900	96,582,900
12	203	34,555,000	103,667,000	10,366,700	148,588,700	46	612	25,227,000	64,869,000	6,486,900	96,582,900
13	204	34,555,000	103,667,000	10,366,700	148,588,700	47	708	25,227,000	64,869,000	6,486,900	96,582,900
14	205	26,021,000	78,065,000	7,806,500	111,892,500	48	802	27,264,000	70,107,000	7,010,700	104,381,700
15	206	26,021,000	78,065,000	7,806,500	111,892,500	49	808	27,264,000	70,107,000	7,010,700	104,381,700
16	207	26,021,000	78,065,000	7,806,500	111,892,500	50	903	27,264,000	70,107,000	7,010,700	104,381,700
17	209	78,624,000	235,874,000	23,587,400	338,085,400	51	1021	30,554,000	78,568,000	7,856,800	116,978,800
18	210	26,021,000	78,065,000	7,806,500	111,892,500	52	1128	30,554,000	78,568,000	7,856,800	116,978,800
19	211	34,555,000	103,667,000	10,366,700	148,588,700	53	1135	27,264,000	70,107,000	7,010,700	104,381,700
20	212	34,555,000	103,667,000	10,366,700	148,588,700	54	1136	27,264,000	70,107,000	7,010,700	104,381,700
21	213	44,628,000	133,886,000	13,388,600	191,902,600	55	1233	31,651,000	81,389,000	8,138,900	121,178,900
22	214	34,555,000	103,667,000	10,366,700	148,588,700	56	1302	27,264,000	70,107,000	7,010,700	104,381,700
23	215	34,555,000	103,667,000	10,366,700	148,588,700	57	1429	30,554,000	78,568,000	7,856,800	116,978,800
24	216	33,716,000	101,149,000	10,114,900	144,979,900	58	1529	30,554,000	78,568,000	7,856,800	116,978,800
25	218	46,587,000	139,761,000	13,976,100	200,324,100	59	1705	27,264,000	70,107,000	7,010,700	104,381,700
26	219	50,084,000	150,254,000	15,025,400	215,363,400	60	1707	27,264,000	70,107,000	7,010,700	104,381,700
27	222	65,613,000	196,841,000	19,684,100	282,138,100	61	1825	30,554,000	78,568,000	7,856,800	116,978,800
28	223	23,083,000	69,251,000	6,925,100	99,259,100	62	1826	30,554,000	78,568,000	7,856,800	116,978,800
29	225	59,318,000	177,955,000	17,795,500	255,068,500	63	1831	31,651,000	81,389,000	8,138,900	121,178,900
30	226	20,705,000	62,116,000	6,211,600	89,032,600	64	2003	28,047,000	72,122,000	7,212,200	107,381,200
31	229	41,271,000	123,813,000	12,381,300	177,465,300	65	2004	28,047,000	72,122,000	7,212,200	107,381,200
32	230	41,271,000	123,813,000	12,381,300	177,465,300	66	2027	31,494,000	80,986,000	8,098,600	120,578,600
33	231	41,271,000	123,813,000	12,381,300	177,465,300						
34	232	41,271,000	123,813,000	12,381,300	177,465,300						

[별지3] 회차별 금액 (10회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no	호실	금액			합계 (VAT포함)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토지가	건물가	부가세	
1	107	36,967,000	147,870,000	14,787,000	199,624,000	35	234	37,143,000	111,431,000	11,143,100	159,717,100
2	114	49,256,000	197,026,000	19,702,600	265,984,600	36	235	75,798,000	227,396,000	22,739,600	325,933,600
3	122-2	12,389,000	49,558,000	4,955,800	66,902,800	37	236	75,798,000	227,396,000	22,739,600	325,933,600
4	123-2	12,087,000	48,350,000	4,835,000	65,272,000	38	237	48,350,000	145,050,000	14,505,000	207,905,000
5	126	77,158,000	308,634,000	30,863,400	416,655,400	39	238	22,790,000	68,370,000	6,837,000	97,997,000
6	128-2	12,087,000	48,350,000	4,835,000	65,272,000	40	239	26,567,000	79,702,000	7,970,200	114,239,200
7	129-2	12,087,000	48,350,000	4,835,000	65,272,000	41	240	32,233,000	96,700,000	9,670,000	138,603,000
8	130-2	12,087,000	48,350,000	4,835,000	65,272,000	42	424	25,524,000	65,635,000	6,563,500	97,722,500
9	131-2	10,274,000	41,097,000	4,109,700	55,480,700	43	428	25,524,000	65,635,000	6,563,500	97,722,500
10	132-2	11,180,000	44,723,000	4,472,300	60,375,300	44	533	26,370,000	67,810,000	6,781,000	100,961,000
11	201	30,344,000	91,034,000	9,103,400	130,481,400	45	608	22,704,000	58,382,000	5,838,200	86,924,200
12	203	31,100,000	93,300,000	9,330,000	133,730,000	46	612	22,704,000	58,382,000	5,838,200	86,924,200
13	204	31,100,000	93,300,000	9,330,000	133,730,000	47	708	22,704,000	58,382,000	5,838,200	86,924,200
14	205	23,419,000	70,258,000	7,025,800	100,702,800	48	802	24,537,000	63,096,000	6,309,600	93,942,600
15	206	23,419,000	70,258,000	7,025,800	100,702,800	49	808	24,537,000	63,096,000	6,309,600	93,942,600
16	207	23,419,000	70,258,000	7,025,800	100,702,800	50	903	24,537,000	63,096,000	6,309,600	93,942,600
17	209	70,762,000	212,287,000	21,228,700	304,277,700	51	1021	27,499,000	70,711,000	7,071,100	105,281,100
18	210	23,419,000	70,258,000	7,025,800	100,702,800	52	1128	27,499,000	70,711,000	7,071,100	105,281,100
19	211	31,100,000	93,300,000	9,330,000	133,730,000	53	1135	24,537,000	63,096,000	6,309,600	93,942,600
20	212	31,100,000	93,300,000	9,330,000	133,730,000	54	1136	24,537,000	63,096,000	6,309,600	93,942,600
21	213	40,165,000	120,497,000	12,049,700	172,711,700	55	1233	28,486,000	73,250,000	7,325,000	109,061,000
22	214	31,100,000	93,300,000	9,330,000	133,730,000	56	1302	24,537,000	63,096,000	6,309,600	93,942,600
23	215	31,100,000	93,300,000	9,330,000	133,730,000	57	1429	27,499,000	70,711,000	7,071,100	105,281,100
24	216	30,344,000	91,034,000	9,103,400	130,481,400	58	1529	27,499,000	70,711,000	7,071,100	105,281,100
25	218	41,928,000	125,785,000	12,578,500	180,291,500	59	1705	24,537,000	63,096,000	6,309,600	93,942,600
26	219	45,076,000	135,229,000	13,522,900	193,827,900	60	1707	24,537,000	63,096,000	6,309,600	93,942,600
27	222	59,052,000	177,157,000	17,715,700	253,924,700	61	1825	27,499,000	70,711,000	7,071,100	105,281,100
28	223	20,775,000	62,326,000	6,232,600	89,333,600	62	1826	27,499,000	70,711,000	7,071,100	105,281,100
29	225	53,386,000	160,159,000	16,015,900	229,560,900	63	1831	28,486,000	73,250,000	7,325,000	109,061,000
30	226	18,634,000	55,904,000	5,590,400	80,128,400	64	2003	25,242,000	64,909,000	6,490,900	96,641,900
31	229	37,143,000	111,431,000	11,143,100	159,717,100	65	2004	25,242,000	64,909,000	6,490,900	96,641,900
32	230	37,143,000	111,431,000	11,143,100	159,717,100	66	2027	28,345,000	72,887,000	7,288,700	108,520,700
33	231	37,143,000	111,431,000	11,143,100	159,717,100						
34	232	37,143,000	111,431,000	11,143,100	159,717,100						